##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강석주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 859 발 의 년 월 일:2023년 05월 30일 발 의 자:강석주, 경기문, 고광민,

구미경, 김규남, 김동욱, 김영철, 김원태, 김재진, 김이향, 김태수, 김형재, 김혜영, 남궁역, 남창진, 박 석, 박성연, 박영한, 박춘선, 송경택, 신복자, 옥재은, 윤종복, 이병윤, 이상욱, 이종환, 최민규, 최호정, 홍국표, 황철규 의원(30명)

#### 1. 제안이유

- 우리나라 '22년 합계출산율은 0.78명으로 OECD 가입국 중 최하위 특히, 서울 합계출산율은 2022년 기준 0.59명으로 전국 최저 수준으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함.
-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공의 영역에서 보다 다자녀 가족을 우대함으로써 다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에 대한 적극적 인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.
- 이에 시립체육시설의 다자녀 가족에 대한 입장료 면제 및 사용료 감면 대상 인원 제한(4명)을 없애 다자녀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안을 공공영역에서부터 실시하여 이러한 분위기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여 조성하려는 것임.

#### 2. 주요내용

가.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다둥이 행복카드에 등재된 가족의 시립 체육시설의 입장료 면제 사항을 규정함. (안 제9조제3항제4호 신설) 나. 시립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대상을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다 둥이 행복카드에 등재된 가족으로 규정함. (안 제10조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, 지방자치법 , 체육시설 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####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감액"을 "감면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후 단 중 "사람,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(본인을 포함하여 4명까지)"를 "사람"으로 하며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다둥이 행복카드에 등재된 가족: 면제

제10조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"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(본인을 포함하여 4명까지)"를 각각 "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다둥이 행복카드에 등재된 가족"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입장료) ①・② (생 략)	제9조(입장료) ①・② (현행과 같
	음)
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	③
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	
라 입장료를 <u>감액</u> 할 수 있다.	<u>감면</u>
1. 18세 이하인 자, 65세 이상인	1
자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	,
장애인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	
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	
른 국가유공자 및 「5・18민	
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	
관한 법률」에 따른 5·18민	
주유공자, 「의사상자 등 예우	
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	
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	
서 정하는 <u>사람, 다둥이 행복</u>	<u>사람</u>
카드 소지자(본인을 포함하여	
4명까지), 「국민기초생활 보	
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: 100분	
의 50 감액	
2. · 3. (생 략)	2. · 3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4.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
	다둥이 행복카드에 등재된 가
	<u>족: 면제</u>
제10조(사용료의 감면) 시장은 제	제10조(사용료의 감면)

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 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- 1. 별표 2 제1호의 개인연습사 용료 감면. 이 경우 감면사유 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 한다.
  - 가. 18세 이하인 자(제7조제4 항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 를 차등하여 징수하는 경 우는 제외한다), 65세 이상 인 자, 다둥이 행복카드 소 지자(본인을 포함하여 4명 까지), 「장애인복지법」 에 따른 장애인, 「국가유 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 공자 및 「5・18민주유공 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 한 법률 | 에 따른 5 · 18민 주유공자,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에 따른 수급자 : 100분의

·
,
가
다둥이 행복카드 소
지자 및 다둥이 행복카드
에 등재된 가족

50 감액 나. ~ 마. (생 략)

- 2. 별표 2 제2호의 생활체육교 실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. 이 경우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 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 나만을 적용한다.
  - 가.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(본인을 포함하여 4명까 지),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, 「국가유공 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「5・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률」에 따른 5·18민주유 공자,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, 「국 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 른 수급자 : 100분의 50 감 액

나. ~ 바. (생 략) 3. ~ 5. (생 략)

나. ~ 마. (현행과 같음)
,
가.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
및 다둥이 행복카드에 등
재된 가족
_
나. ~ 바. (현행과 같음)

3. ~ 5. (현행과 같음)